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

2019. 3. 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점검과

이 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입니다. 본 매뉴얼의 임의 수정 및 재배포 시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전 매뉴얼(2018. 5.) 이후 변경된 내용입니다 ***

☞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정책·제도/경쟁정책/경제력집중억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요 개정내용

< 공시 양식 >

□ 회사 손익현황 작성양식 개정(작성양식 ③ 변경)

- 영업외 손익만 기재하던 양식을 영업외손익 또는 기타손익+금융손익을 함께 기재하도록 공시양식 수정

< 작성 방법 >

- (공시의무 적용대상 회사 및 책임) 연도 중 신규지정, 계열편입된 회사의 공시 시기 및 항목 기준
-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금융리스만 작성하고 운용리스는 제외
- (계열회사간 유가증권 거래현황) 흡수합병과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 예시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대표회사의 기재 요령
-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주의사항

- 목 차 -

1. 도입 배경 / 1
 2. 제도의 개요 / 2
 3. 법적근거 / 4
 4. 주요용어 설명 / 5
 5. 적용대상 회사 및 책임 / 8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11
 7. 공시절차 / 96
 8. 수탁기관의 업무 / 100
 9. 위반시 제재 / 101
- * 기업집단 현황 공시 체크리스트 / 102

1 도입배경

□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2009.3월 개정. 2009.7월 시행)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
(사전규제, 직접규제 ⇒ 사후규제, 간접규제)

<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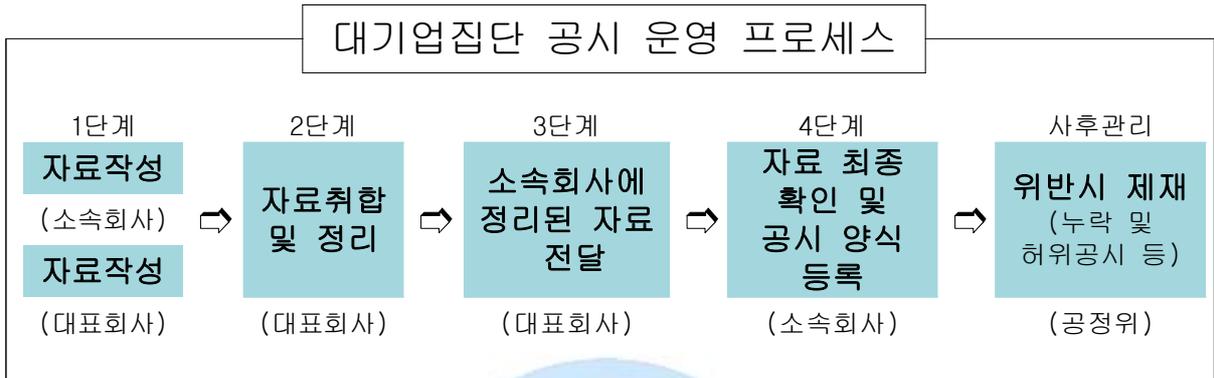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소속회사”)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토록 하는 제도

☞ 공정거래법(2017.4.18) 및 시행령(2017.7.17)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으로 공시의무 확대 * 2017년 3분기 공시부터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결 및 공시(2000.4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2005.4월) 도입

2 제도의 개요

1.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운영 현황



- * 소속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당해 회사로, 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 * 대표회사 : 당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소속회사의 공시 사항을 취합·공시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 기업집단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청·확인을 받음

□ (공시자료 작성) 소속회사(원칙) + 대표회사(예외)

- 각 소속회사의 정보로 구성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소속회사가 공시자료를 작성

□ (공시내용 취합) 대표회사

-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 공시사항을 최종 취합

□ (공시주체) 소속회사

- 대표회사는 소속회사(대표회사 포함)로 부터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소속회사는 기업집단 전체 현황 중 자기회사 관련사항만 공시하고, 기업집단 전체현황은 대표회사 공시를 참조할 것을 기재

(참조공시 방법 : 매뉴얼 후단 ‘참조공시 연결 작업순서’ 참고)

-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이 경우 공시양식 ① “회사의 개요” 는 상기 소속회사를 대신하여 대표회사가 공시)

2.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공시빈도) 분기별 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의 변경빈도·기업의 작성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연1회 공시
 -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현황·유가증권 거래현황·기타 자산 거래현황·채무보증 현황·담보제공 현황, 순환출자 변동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여부 등은 분기별 공시
 -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소유지분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채권·채무 잔액현황,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등은 연1회 공시
- (공시시기)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4분기-2.28, 1분기-5.31, 2분기-8.31, 3분기-11.30), 연1회 공시사항은 매년 5월31일까지 공시 * 5월31일은 연공시 및 1/4분기 공시
- (공시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 공시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공시양식을 삭제하고(혹은 양식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지 말것(미공시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시양식의 칸 또는 줄에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으로 기재

- 공시 대상 회사가 12월 말 결산 법인이 아닌 경우, 회사의 결산일에 맞춰 공시내용 조정 가능

[예시] 11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1/4분기 공시(5월31일)는 12월부터 2월말까지 결산한 내용을 공시

3 법적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의4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현황, 채무보증현황, 의결권 행사 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1
 -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공시사항 및 공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시 고시)
 -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시 과태료 고시)
 - 위반행위별 과태료 산정기준 및 가중 감경사유 등을 규정

4 주요용어 설명

1. 동일인

☐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

2. 동일인 관련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규정

○ 동일인의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친족)

- 혈족은 민법 제768조에 의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인척은 민법 제769조에 의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동일인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해당, 동일인 자녀의 배우자 부모(사돈)는 미해당)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해당,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만, 동일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 가능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을 말함
 -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의미

3. 기업집단

- 동일인이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

* 동일인등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 최대출자자. 임원 등을 통해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2이상의 회사,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회사 외 1이상 회사

4. 공시대상 기업집단

-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기업집단 > 공시대상 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 계열회사

☐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외 계열회사 등 범위에 한정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라 하면 국내 및 해외 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7. 소속회사(속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비상장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공시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당연 포함).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 대상
- * 공시집단 및 상출집단은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정하므로 공시집단 및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소속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됨

- * 계열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이하, 본 기업집단 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에서 ‘소속회사’ 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내회사)를 의미하고, ‘계열회사’ 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계열회사 + 해외 계열회사를 의미함

8. 대표회사

- 당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기업집단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청·확인을 받음)

9. 최대주주(혹은 최다출자자)

- 소속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함
- 최대주주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때 동일인 뿐만 아니라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함

5 공시의무 적용대상 회사 및 책임

1. 공시의무 적용대상 (공시주체)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소속회사).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청산 중’은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 선임결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휴업 중’은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를 말함

** 공시주체에는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만 해당되나, 공시할내용(객체)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만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님. 해외계열사, 임원, 친족 등은 소속회사는 아니지만 공시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다수

2. 연도 중 공시집단 소속회사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경우

- 공시대상 여부는 편입통지일, 계열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계열 편입된 회사는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일부터 공시의무 발생

[참고] 연도중 공시집단 계열편입(혹은 신규지정)된 회사들의 공시작성 기준

- * 기준 : (연공시) 연공시일(5.31) 이전 편입되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공시부터, 6월1일 이후 편입·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공시부터
(분기공시) 편입된 날 또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공시일부터 의무발생.

편입·지정일	분기공시	연공시
1월·2월·3월	1/4분기 공시(5.31) 부터	금년도 연공시(5.31)부터
4월·5월	2/4분기 공시(8.31) 부터	금년도 연공시(5.31)부터
6월	2/4분기 공시(8.31) 부터	다음연도 연공시 부터
7월·8월·9월	3/4분기 공시(11.30)부터	다음연도 연공시 부터
10월·11월·12월	4/4분기 공시(2.28) 부터	다음연도 연공시 부터

- * 연도중 계열편입된 회사 : 11.1에 계열편입된 회사는 4/4분기 공시에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작성시 11.1 ~ 12.31이 아니라 10.1 ~ 12.31로 작성
- * 연도중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연공시 작성 시
 - ① 회사의 개요, 해의 계열회사 현황, 임원현황, 주식소유현황, 국내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 금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일 기준으로 공시
 - ② 재무현황, 손익현황,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공시
 - ③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거래를 공시
- * 계열회사의 변동내역,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은 작성 불필요

- 기존 소속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회사와의 거래내역 중 계열 편입된 날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은 ‘기타’에 기재, 계열편입일 이후 거래내역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계열제외된 회사 또는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제외 또는 지정제외 통지일로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제외된 회사와의 거래 내역 중 계열제외된 날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계열제외된 날부터의 거래내역은 ‘기타’에 포함하여 기재

[예시] 5월에 계열제외된 회사(A)의 경우 1/4분기 공시(5.31)부터 공시 면제. 다만 계열제외된 회사(A)와 거래한 소속회사(B)의 경우 A와의 거래 내역을 공시

3. 공시책임

□ 소속회사는 자기회사의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미공시 등의 책임을 짐

□ 다만,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취합·공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회사’와 ‘소속회사’의 역할을 구분

- 대표회사는 소속회사로부터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기업집단 전체의 순환출자 현황 등)은 최종 작성 책임

- 소속회사는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를 취합·공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고, 자기회사 공시사항을 공시할 의무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 주요 공시항목은 ①일반현황 ②임원 및 이사회 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④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⑤순환출자현황 ⑥지주회사 현황 ⑦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등 7개 범주로 구분되고 이는 26개 항목으로 세분류
- ☞ 항목별로 분기공시 또는 연1회 공시

< 항목별 공시내용 및 공시빈도 >

공시항목	공시내용	공시빈도
일반현황	① 회사개요 (H)영위업종 현황 ② 회사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③ 회사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④ 해외 계열회사 현황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연1회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⑥ 임원현황(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등) ⑦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운영현황	연1회
주식소유현황	⑧ 소유지분현황 ⑨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연1회 분기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⑩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⑪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⑫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⑬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⑭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⑮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상장비상장) ⑯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⑰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⑱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⑲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⑳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㉑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㉒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연1회 분기/연1회 분기 연1회 분기 연1회 분기 연1회
순환출자현황	㉓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㉔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연1회 분기
지주회사현황	㉕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연1회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㉖ 금융·보험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현황	분기

세부 공시내용

1 회사개요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통상 5월 1일, 이하 같음) 기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회사의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 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 공정위가 편입통지를 한 날

*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 계열편입일은 공정위가 지정한 날(5.1)이 아니라 회사 설립·지분취득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기업집단에 계열편입된 날을 기재

□ 작성방법

- 개별 소속회사는 자기회사에 관한 내용을 성실히 기재
 -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구분(불필요한 칸 삭제)
- 각 기업집단의 대표회사는 자기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 현황표를 작성하고 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함
 - 단, 자기회사(대표회사)를 전체현황 양식의 최상단·최좌측에 기재하고, 따로 소속회사 공시양식은 작성하지 아니함

☞ 이하 모든 공시사항에 있어서 동일함

- 작성 기준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속회사로서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소속회사의 현황은 대표회사가 작성하여 공시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1>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명)

소속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비 금융 회사	A(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B							
	...							
금 금융 회사	C							
	D							
합계	⑨	-	-	-	-	⑩	⑪	-

< 기재요령 >

- ①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공시하는 회사)명을 기재
- ②에는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명 또는 대표집행임원명을 당해연도 지정일(등기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 단, 대표자가 집행임원인 경우 성명 옆에 “(집행임원)” 을 붙임
- ③에는 당해 회사의 설립일을 기재
- ④에는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하여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었음을 통지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회사의 경우)
단,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의 경우, 계열편입일은 회사 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기업집단과 계열 관계가 성립된 날을 기재(공정위가 지정한 날(5월1일)이 아님)
- ⑤에는 회사의 주력업종(또는 매출액 최다 업종)을 기재. 주력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알파벳과 4자리 숫자 사용)에 따른 코드번호와 주력업종명을 기재
[예시: “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 ⑥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를 기재
*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월급여간이세액(A01)의 총인원
- ⑦에는 공시일 현재 유가증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상장’, 공개기업이 아닌 경우 ‘-’ 로 표시
- ⑧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에는 소속회사(국내계열회사)의 수 합계를, ⑩에는 종업원수의 합계를 ⑪에는 기업집단 내 공개 기업(상장사)의 수를 기재

1-1 영위업종 현황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매출이 존재하는 모든 영위업종과 영위업종 별 대표 품목(대표사업)을 작성
- 작성방법
 - 개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또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작성
 - 영위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 대표 품목은 영위업종 중 매출액이 큰 품목을 작성

이해돕기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제정
-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통계분류(왼쪽 상단에 위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자료실>에서 이용 가능

- ☞ 영문자 1개와 숫자 5개로 구성

[예시] A12345

A	12	3	4	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 ☞ 기업집단현황공시는 세분류를 주로 사용, 영문자와 4번째 숫자까지 표시
[예시 : A1234]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1-1>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영위업종	대표품목(대표사업)
비금융회사	A(①)	②	③
	B		
금융회사	C		
	D		

< 기재요령 >

- ①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명을 기재
- ②에는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또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된 모든 영위업종을 기재. 영위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 기준
- ③에는 영위업종별 대표품목(제조업) 또는 대표사업(기타업종)을 기재
 [예시] (영위업종) 곡물가공품 제조업 → (대표품목) 밀가루
 (영위업종) 대형종합소매업 → (대표사업) 대형마트

공정거래위원회

2 회사 재무현황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일 6·9·12월에 속한 경우) 기준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소속회사의 자산(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자본금, 자본총계) 및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등
- 작성방법
 - 개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
 - 유동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포함한 유동자산 전체금액을 기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 '차입금'은 별도 칸에도 기재

☞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의 작성 방법

유동자산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자산
유동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등
비유동부채	기타부채

-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상 모든 차입금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외화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등
 - * 차입금계정에 사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채도 합산하여 기재 가능 (즉, 사채가 별도 계정일 경우 합산하지 않음)

이해돕기

- ☞ 재무제표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회계보고서로서, 회계기간 말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는 현금흐름표 및 주석 등으로 구성
- ☞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

자산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
	비유동자산	: 1년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
부채	유동부채	: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등 부채
	비유동부채	: 1년 이후에 상환하는 장기차입금 등 부채
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 재무상태표 >

과목	당기말	전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
~		
Ⅱ. 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	××××××
부채		
Ⅰ. 유동부채	××××××	××××××
~		
Ⅱ. 비유동부채	××××××	××××××
~		
부채총계	××××××	××××××
자본		
Ⅰ. 자본금	××××××	××××××
~		
자본총계	××××××	××××××

이해돕기

☞ 「유동성장기부채」란?

- 사채나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항목 중에서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면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
- 장기사채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성장기사채, 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성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상외화장기차입금 등으로 구분하나, 모두 합쳐서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상함

☞ <재무현황> 양식의 「⑥ 차입금」에 기재될 유동성장기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등을 의미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소속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a)	현금 및 현금성자산	비유동 자산 (b)	자산 총계 (a+b)	유동 부채 (c)	비유동 부채 (d)	부채총계 (c+d)	차입금	자본금	자본 총계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소계										
금 용 회 사	C	①	②	③	④	⑤		⑥			
	D										
	소계										
합계							⑧			⑨	⑩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상태표 상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작성

- ①에는 유동자산 전체 금액, ③에는 비유동자산 전체 금액을 기재
- ②에는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 기재. 단기금융상품 등 기타 과목을 합산 하지 않음
- ④에는 유동부채 전체 금액, ⑤에는 비유동부채 전체 금액을 기재
- ⑥에는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해외단기차입금, 해외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해외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등 재무제표상 모든 차입금 계정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사채가 차입금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채도 차입금에 합산하여 기재 가능
- 금융업의 경우 다음의 계정과목의 금액을 기재. ① :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③ : 유형자산, 기타자산, ④ : 예수부채, 차입부채 등, ⑤ : 기타부채
- ⑦에는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을 ○○.○○% 양식으로 기재 (자본잠식인 경우 '자본 잠식'으로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각 란에 합계를 기재하고 ⑩에는 기업집단전체의 부채비율[기업집단 부채 총계의 합계(⑧)를 기업집단 자본총계의 합계(⑨)로 나눈 비율]을 기재

③ 회사 손익현황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일 6·9·12월에 속한 경우) 기준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회사의 매출액(또는 영업수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기타손익, 금융손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 작성방법
 - 개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금융수익은 기타수익등에, 영업외비용 또는 기타비용+금융비용은 기타비용등에 기재

- ⇒ IFRS 도입으로 동일계정과목이 없을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주석으로 표기

이해돕기

☞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관계회사 투자손익, 금융수익, 금융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당이익 등으로 구성

☞ 손익계산서 쉽게 이해하기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관리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영업이익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금융
수익 - 금융비용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손익계산서 >

과목	당기말	전기말
I .매출액	× × × × × ×	× × × × × ×
~		
II .매출원가	× × × × × ×	× × × × × ×
~		
III .매출총이익	× × × × × ×	× × × × × ×
IV .판매비와 관리비	× × × × × ×	× × × × × ×
~		
V .영업이익	× × × × × ×	× × × × × ×
VI .기타수익	× × × × × ×	× × × × × ×
~		
VII .기타비용	× × × × × ×	× × × × × ×
~		
VIII .금융수익	× × × × × ×	× × × × × ×
~		
IX .금융비용	× × × × × ×	× × × × ×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 × ×	× × × × × ×
XI .법인세비용	× × × × × ×	× × × × × ×
XII .당기순이익	× × × × × ×	× × × × × ×
XIII .주당이익	× × × × × ×	× × × × ×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3>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소속회사명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영업이익	기타수익등	기타비용등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비금융 회사	A						
	B						
	소계						
금융 회사	C			①	②	③	
	D						
	소계						
합계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 이외의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금융수익을 기재
2. ②에는 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 이외의 영업외비용 또는 기타비용+금융비용을 기재
3. ③에는 영업외비용 또는 금융비용 등에 포함되는 이자비용을 기재

※ IFRS 도입으로 동일 계정과목명이 없을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주석으로 표기

공정거래위원회

4 해외 계열회사 현황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해외계열사의 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다출자자, 최다출자자 지분 등

□ 작성방법

○ 해외계열사의 최다출자자인 소속회사가 작성·공시

- 최다출자자가 2개사 이상인 경우 대표 1개사만 작성·공시하여도 무방. 그러나 2개사 모두 공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에 해당

○ 해외계열사 여부는 국내계열사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30% 이상 최다출자자 혹은 실질 지배력 기준) 적용

*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집단은 국내법인 중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동일인의 최다출자자인 외국에 있는 법인은 해외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음

[예시] 지엠대우(외국계 국내법인)의 최다출자자인 지엠(미국 법인)은 지엠대우의 해외 계열사가 아님

○ 내부지분율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 해외계열사(A)가 지배하는 해외계열사(B)도 기재하며, 당해 해외계열사(A)의 최다출자자(국내 소속회사 '갑')가 공시 (예시 <표> 참조)

○ 대표회사가 소속회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공시할 경우 최다출자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

[예시] 공시의무 회사

해외계열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대출자자	공시의무자 (소속회사)
A	갑	갑
B					A사	갑
C					을	을
D					C사	을
E					갑, 을	갑, 을
...					...	
합계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4>

(금년도 지정일 기준)

해외계열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대출자자	최대출자자 지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합계	⑧	-	-	-	-	

< 기재요령 >

1. ①에는 해외계열사명을 기재
2. ②에는 당해 회사의 영위업종을 간략하게 기재 (예: 반도체 판매업, 건설업, 무역업 등)
3. ③에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4. ④에는 소재국을 간단하게 기재 (예: 미국, 일본, 영국 등)
5. ⑤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6. ⑥에는 당해 회사의 최대출자자명을 기재
7. ⑦에는 ⑥에 기재한 최대출자자의 지분율을 기재
8.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⑧에 해외계열사의 총 개수를 기재

5 계열회사 변동내역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까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국내 및 해외 계열회사의 계열편입과 계열제외 내역에 대한 계열회사명, 변동사유, 변동일자 등

□ 작성방법

- '계열편입'은 편입된 소속회사가 직접 작성·공시하고, '계열제외'는 대표회사가 작성·공시
- 해외계열사 변동내역은 최다출자자(앞 4 해외계열회사현황 참조)가 작성·공시하며,
 - 최다출자자가 2개사 이상인 경우 대표 1개사만 작성·공시하여도 무방. 그러나 2개사 모두 공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에 해당
- 해외계열사의 변동일자는 지분을 취득 또는 매도한 날을 변동일자로 작성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5>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기준)

계열회사명	변동사유	변동일자	업종
⑤편입 00개			
1. △△△△ ①	②	③	④
⑤제외 00개			
1. △△△△ ①	②	③	④
⑤순증 00개			

< 기재요령 >

- ①에는 해당 기간 중 편입·제외된 계열회사(국내+해외)명을 기재
- 국내회사(편입·제외일자가 빠른 순서) ⇒ 해외회사(편입·제외일자가 빠른 순서) 순서로 기재
- ②에는 변동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예: 편입-회사설립, 지분취득, 기타 등, 제외-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친족분리, 지정제외, 기타 등)
- ③에는 당해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편입·제외일로 통지 받은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해외계열사의 변동일자는 지분을 취득한 날 또는 매도한 날을 기재
- ④에는 주력업종(매출최다 업종)을 기재.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알파벳과 4자리 숫자 사용)의 코드번호와 주력업종명을 기재 [예: “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 ⑤에는 해당 기간 내 편입 회사수, 제외 회사수, 순증(감소)계열사 수를 기재
[예: 2개(감소는 △2개)로 표시]

6 임원현황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회사 임원의 성명, 직위, 사외이사 여부, 등기일(선임일), 동일인과 친족관계 여부, 겸직사항(타사에서 등기임원인 경우 기재), 주요경력, 중임여부 등

□ 작성방법

-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등)에 대하여 작성. 즉, 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임원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직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감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
 - '주요경력' 칸은 현 직위를 부여받기 직전의 경력(회사명, 직위)을 기재하되, 최근 5년 이내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인 경우 퇴직한 계열사와 직위를 '퇴직임직원' 칸에 작성
 - 임원의 중임 판단기준
 - A라는 임원(직위: 사내이사)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임)되고 같은 날 같은 직위로 선임된 경우에만 중임으로 봄
- * 단, 임기 만기일 전에 해임되고 같은 직위로 선임된 경우에는 '중임' 으로 기재하고, 표 하단에 각주를 통해 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6>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임원명	직위	취임일	등기일	동일인과 친족관계	겸직사항	주요경력	퇴직임직원	중임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비 금융 회 사	A								
	B								
금 융 회 사									

< 기재요령 >

- ①에는 소속회사의 등기된 임원의 성명(任員名)을 기재
- ②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대상)
*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과 사내이사 2칸으로 구분하여 기재(③,④ 다를 경우 대비)
- ③의 “취임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취임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중임된 경우는 최초 취임일을 기재
- ④의 “등기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등재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중임된 경우는 최초 등기일을 기재
- ⑤에는 동일인과 친족관계(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혈족○촌’ 또는 ‘배우자’ 등으로 기재하고,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는 ‘-’로 표시
- ⑥에는 당해 임원이 등기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명을 기재하고, 다른 회사가 계열사인 경우 △△△(계열), 비계열회사인 경우 ○○○으로 기재. 한편, 해외에서 이사에 준하는 직위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기재
- ⑦에는 현 직위를 부여받기 직전의 경력(회사명, 직위)을 기재. 다만, 최근 5년 이내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인 경우 ⑧에 별도로 기재
- ⑨에는 해당 임원의 중임 여부에 따라 신임, 중임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임원의 중임 판단기준 : A라는 임원(직위: 사내이사)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임)되고 같은 날 같은 직위로 선임된 경우를 말함. 임기 만기일 전에 해임되고 같은 직위로 선임된 경우에는 ‘중임’으로 기재하고, 표 하단 각주에 등 내용을 간략히 기재

7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가. 이사회 운영 현황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이사회의 구성원명,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회의에 참석·불참한 사외이사 수, 의안에 반대한 사외이사 수 등
- 작성방법
 - 「의안내용」은 의결사항 별로 작성하고, 각 의결사항 별 가결·부결 여부 등 기재
 - 「사외이사」 참석·불참·반대 칸을 기재할 경우 사외이사 만을 의미하며, 기타비상무이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이사회구성원명」은 개최일 기준 구성원명을 기재, 감사는 포함되지 않음
 - 이사회 구성원 중 불참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명에는 포함하여 기재

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이사회내 위원회의 명칭, 구성원명, 설치목적 및 권한,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회의에 참석·불참한 사외이사 수, 의안에 반대한 사외이사 수 등

□ 작성방법

-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 한하여 기재
 - * [예시]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 위원회가 해당기간 중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회의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포함하여 기재
- 「의안내용」은 의결사항 별로 작성하고, 각 의결사항 별 가결·부결 여부 등 기재
- 「사외이사」 참석·불참·반대 칸을 기재할 경우 사외이사 만을 의미하며, 기타비상무이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이해돕기

☞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회사의 정관을 통해 이사회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사회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다.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상법상 서면투표제(제368조의3) 및 전자투표제(제368조의4), 집중투표제(제382조의2) 등의 도입여부 및 제도운영사례 여부

작성방법

- 「도입여부 판단기준」 및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각 제도의 도입여부를 “O”, “X” 로 기재하고, 실제 제도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안에 “O(실시)”라고 표기

* [예시] 도입 및 실제 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 “○(실시)”

도입 후 실제 운영사례가 없는 경우 : “○” 으로만 표시

[주의사항]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도입된 제도가 없는 경우 ‘×’로 공시할 것.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지 말 것

- 「도입여부 판단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집중투표제 : 정관에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도입(상법 제382조의2)
 - 서면투표제 : 정관에 도입하기로 한 경우 도입(상법 제368조의3)
 - 전자투표제 :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경우 도입(상법 제368조의4)

[주의사항]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의하여 모든 회사가 도입의무화. 다만, 정관에 배제 규정이 있는 경우 도입하지 않음.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다면 “○”로 표시, 실제 제도운영사례까지 있다면 “○(실시)”로 표시

☞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 즉, < 의결권=보유주식수×이사후보수 >

-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 전년도 지정일 부터~금년도 지정일 까지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행사 사례가 있었던 경우에만 운영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해돕기

- ☞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관련하여 정관의 배제규정 확인하기
- 집중투표제는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어, 공시 전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예시 1]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경우

제 4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25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이사는 5명, 감사는 1명으로 한다.

제 26 조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상법 제 382 조의 2 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예시 2]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제 25 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가 통지한 총회소집통지서에 첨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돕기

☞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 목적을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행사자, 소수주주권내용, 행사 사유 등

□ 작성방법

- 소수주주권이란 경영진에 의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될 경우 소수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제기권'
 -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 서면으로 청구한 총회의 소집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이 가능한데 다수의 전횡에 의해 해임 청구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는 '이사 해임청구권'
 -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사 행위 유지 청구가 가능한 '이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7>

가. 이사회 운영 현황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이사회 구성원명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	불참	반대
비금융 회사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금융 회사	C							
	D							

< 기재요령 >

- ①에는 ②에 기재한 이사회 개최일 기준 이사회 구성원명(構成員名)을 기재한다. 다수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기재 후, 주석으로 구성원 명을 기재 가능
* 이사회 구성원 중 불참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명에는 포함되어야 함
- ②에는 이사회 개최 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 ③에는 의결사항 별로 기재 (보고사항 등 의결을 하지 않는 건은 제외)
- ④에는 의결사항 별로 가결여부를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등으로 표시
- ⑤에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 수, ⑥에는 불참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하고, ⑦에는 해당 의안에 반대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사외이사 만을 의미, 기타 비상무이사 등은 불포함)

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위원회명	법령상 설치의무	구성 원명	설치목적 및 권한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	불참	반대	
비 금 융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금 금 융 회 사	C										
	D										

< 기재요령 >

- ①에는 위원회명(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기재하되, 실제 위원회가 해당 기간 중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
- ②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을 기재(예: 상법 제542조의11, 자본시장 및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법령상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 표시
- ③에는 ⑤의 개최일자의 해당 위원회 구성원명(構成員名)을 기재. 다수인 경우 ○○○ 외 △명
으로 기재 후, 주석으로 구성원명을 기재
* 위원회 구성원 중 불참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명에는 포함되어야 함
- ④에는 설치 목적 및 권한을 기재(예, 설치목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설치. 권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 ⑤~⑩은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기재

다.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비고
비금융계열회사	A	①	②	④
	B			
	⑤소계			-
금융계열회사	C			
	D			
	⑤소계			-
⑥합계				-

< 기재요령 >

- ①~③에는 다음 “도입여부 판단기준” 및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각 제도의 도입여부를 O, X로 기재하고, 제도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O” 표시 옆에 “(실시)”를 붙여서 표기

예시) 도입 및 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 “O(실시)”, 도입하였으나 운영사례가 없는 경우 : “O”,
도입하지 않은 경우 : “X”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하지 말 것)

◆ 도입여부 판단기준(금년도 지정일 기준)

- 집중투표제 : 정관에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도입(상법 제382조의2) 정관 반드시 확인
- 서면투표제 : 정관에 도입하기로 규정한 경우 도입(상법 제368조의3)
- 전자투표제 :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경우 도입(상법 제368조의4)

◆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까지) : 주주총회에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행사가 발생한 경우 “(실시)”라고 기재

- ④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상법의 일반원칙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간단하게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 ⑥에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 및 실시한 비금융계열회사, 금융계열회사, 전체계열회사의 수를 각각 “도입건수(운영사례건수)”로 기재
예시) 집중투표제를 10개사가 도입하고 2개사에 제도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 “10 (2)”로 기재

라.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행사자	소수주주권 내용	행사 사유
비금융계열회사	A	①	②	③
	B			
	④소계		-	-
금융계열회사	C			
	D			
	⑤소계		-	-
	⑥합계		-	-

< 기재요령 >

- ①에는 소수주주권 행사자 명을 기재한다. 다수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 후, 주석으로 행사자명을 기재 가능
- ②에는 소수주주권 내용을 기재(예시 : 대표소송제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 ③에는 행사사유를 기재 (예시 :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④, ⑤, ⑥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비금융 계열회사, 금융 계열회사, 전체 계열회사의 수를 각각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8 소유지분현황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소속회사의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 등을 기재

□ 작성방법

- (동일인측 범주) 동일인, 배우자/혈족1촌, 혈족 2~4촌, 혈족 5~6촌, 인척 4촌이내, 비영리법인, 등기된 임원(자기회사·계열회사·비영리법인의 등기된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 등

[주의사항] 계열회사에 해외계열사도 포함됨을 주의

- (기타주주 범주) 동일인측이 아닌 최다출자자, 기타

양식 작성 돕기

☞ 동일인측이 최다주주인 경우

- ①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② 동일인측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⑩번 칸에 기재

☞ 동일인측과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이 공동 최다주주인 경우

- ①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②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의 지분을 ⑩번 칸에 성명과 주식수를 기재
- ③ 기타 소액주주의 지분에 대해 ⑪번 칸에 기재

☞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이 최다주주인 경우

- ①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②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의 지분을 ⑩번 칸에 성명과 주식수를 기재
- ③ 기타 소액주주의 지분에 대해 ⑪번 칸에 기재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8>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소속회사명	동일인과의 관계	성명	보통주		우선주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비 금 용 회 사	A	동 일 인 측	동일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 족	배우자/ 혈족1촌								
				혈족2~4촌								
				혈족5~6촌								
				인척 4촌 이내								
			⑧ 친족 합계									
		비영리법인										
		등기된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 (국내+해외)										
		기타 동일인관련자										
		⑨ 동일인측 합계										
	기 타 주 주	동일인측이 아닌 최다주주	⑩									
		기타				⑪						
		총 계				⑫	100%	⑫	100%	⑫	100%	
B	...											
금융 회사	C	...										
D	...											

< 기재요령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①의 '동일인'이란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
- ②(④)와 ③(⑤)에는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에 대한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 [동일인 보유 보통(우선)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 보통(우선)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⑥에는 ②와 ④의 합계를, ⑦에는 A회사 발행 총 주식수(보통주+우선주)에 따른 지분율을 기재.
- ⑧에는 A회사에 대한 친족(배우자/혈족1촌, 혈족2~4촌, 혈족 5~6촌, 인척 4촌 이내)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⑨에는 동일인측(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⑩에는 동일인측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최대출자자)명을 기재하고 해당 주주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A회사에 대해 동일인측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측'란에 동일인측 주식수와 지분율을, 최대출자자는 '기타주주-동일인측이 아닌 최대출자자'란에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⑪에는 A회사 주주 중 ⑨과 ⑩을 제외한 기타 주주 전체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동일인측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⑨를 제외한 기타 주주 전체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⑫에는 A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를 기재

9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 (작성기준) 직전 분기말 기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 주식수, 지분율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방법

○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로 구분하여 기재

○ 「장부가액」 칸에는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을 기재

-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이 없거나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검토보고서 내지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재. 다만, 공시정보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주석 등의 방법으로 표시

* 지분율에 변동이 있거나 배당금을 받은 사유 등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분기말 장부가액에 미반영한 경우 등

○ 자기주식도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비율 및 장부가액을 기재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9>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주, %, 백만원)

		출자회사 (소속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A	B		· ·	소계	C	· ·
피출자회사				주식수	지분율					
계 열 회 사	비 금 용 회 사	A	장부가액	①						
			보통주	②	③					
			우선주	④	⑤					
			합계							
	B		⑥							
	· ·									
	장부가액 소계			⑦						
	금 용 회 사	C								
		D								
		· ·								
		장부가액 소계			⑦					
	합계			⑧						

< 기재요령 >

※ 출자회사가 공시. 개별 재무제표 기준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①에는 B사(출자회사, 공시주체)가 보유한 A회사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직전 분기말 기준)을 기재
- ②(④)에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보통주(우선주)를 기재하고, ③(⑤)에는 그 지분율을 기재
- ⑥에는 B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을 기재
- ⑦과 ⑧에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장부가액 각각의 합계와 전체 장부가액의 합계를 기재

10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 (작성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다만, 당좌차월 거래내역은 직전 분기말 기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작성방법

- 직전 분기동안 차입한 금액을 발생금액 기준으로 작성
 - 직전 분기동안 차입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어도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 차입금액을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

[예시] ① ××××년 2/4분기에 국내계열회사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한 후 같은 분기동안 30억원을 상환하였더라도 100억원으로 기재(70억원 아님)

② 이전 분기에 30억원 차입한 후 직전 분기에 연장한 경우 30억원을 기재.
단, 이때 10억원은 상환하고 20억원만 연장하였다면 20억원을 기재

- 은행 등과 여신한도 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당좌차월,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차입)는 직전 분기말 실제 잔액을 기재.

[주의] 아울러, 당좌차월은 별도의 <당좌차월 거래내역> 양식에도 작성하여야 함

- 금융리스는 '차입'으로 보아 공시대상(운영리스는 제외)

- (공시대상에 제외되는 차입금) ①사채·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②가수금, ③제품·원자재 등 수입에 따른 외화단기차입금(Usance, 유산스만 제외), ④콜차입·만기 7일 이내 증권 금융 차입, ⑤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단기차입금 등

이해돕기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 리스(lease)란 특정한 경제자원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회사에게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리스의 기능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 금융리스 : 자본리스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임차자산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계약이며,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리스
- 운용리스 : 임차인이 임차자산을 필요한 기간만 이용하고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것
- 리스자산의 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구입자금을 금융기간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즉 자산을 할부 구매한 것과 같다면)이면 금융리스, 정수기처럼 대여 수준이면 운용리스

☞ **가수금** : 현금을 받았으나 계정과목,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부채계정

☞ **유산스** : 환어음의 지급기간. 어음의 지급방법에는 제시와 더불어 즉시 지급되는 일람출급어음과 지급일이 지급약속을 표명한 후 일정기간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어음이 있음. 기한부 어음은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무역대금 결제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0>

가. 계열회사로부터 자금 차입현황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대여자 차입회사 (소속회사)	국내 계열회사								기타 합계	총 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A	B	· ·	소계	C	· ·	소계				
비 금 용 회 사	A										
	B	①			②			③	④	⑤	⑥
	· ·										
	소계	⑦									
금 용 회 사	C										
	D										
	· ·										
	소계	⑧									
합계	⑨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차입한 회사(소속회사)가 공시

- ①에는 B사(차입한 회사, 공시주체)가 A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기재
- ②와 ③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와 금융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
- ④에는 B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②+③)를 기재
- ⑤에는 국내 계열사를 제외한 자(금융기관, 타법인, 해외계열사 등)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⑥-④)를 기재
- ⑥에는 전체 차입 금액의 총계를 기재
(* ⑥총계는 감사보고서 상 장부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표회사는 ⑦⑧⑨에 모든 계열회사가 A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나. 당좌차월 거래내역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당좌차월을 약정한 회사 (소속회사)		당좌차월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약정 한도	분기말 당좌차월 잔액	약정 기간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소 계				
	B				
비금융회사 합계				④	
금 용 회 사	C				
	D				
	금융회사 합계			⑤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⑥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①, ②에는 A사가 직전 분기말 유효한 모든 당좌차월을 건별로 약정 한도, 분기말 당좌차월 잔액(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재
- ③에는 약정기간 기재. (예) 2012.2월~2013.3월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④~⑥에 분기말 당좌차월 등의 잔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11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공시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

□ 작성방법

○ 직전 분기동안 대여한 금액을 발생금액 기준으로 작성

- 직전분기동안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라도 상환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 대여금액을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경우에는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

[예시] ① ××××년 2/4분기에 동일인 등에게 10억원을 대여한 후 같은 분기동안 5억원을 상환받았더라도 10억원으로 기재

② 이전 분기에 10억원 대여한 후 직전 분기에 연장한 경우 10억원을 기재. 단, 이때 5억원은 상환받고 5억원만 연장하였다면 5억원을 기재

○ 친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 다만, 당해 양식에서는 친족에 속하는 배우자, 혈족1촌은 동일인과 같은 칸에 기재하므로 주의

-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1>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대여회사 (소속회사)		관계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 용 회 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①에는 A사(소속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③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④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⑤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의 합계(①+②+③+④)를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⑦⑧에 모든 계열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에게 대여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2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 (공시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국내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의 매도가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금액)

□ 작성방법

○ 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

* 수익증권의 환매, 채권이나 CP 매입 후 상환 등은 공시대상이 아님

○ 소속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국내계열회사에게 주고 돈(또는 현물 등)을 받은 경우 공시대상

- 즉, 매도에는 매각 뿐 아니라 제공, 발행 등도 포함된 개념으로 유상증자, 교환 등을 통해 유가증권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무상증자는 돈 등을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공시대상 아님)

* (예시) A가 B를 흡수합병하면서 B의 주주인 C(계열회사)가 B의 주주에서 A의 주주가 된 경우 A와 C 모두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소속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돈(또는 현물 등)을 받고 유가증권이 감소되는 유상감자가 공시대상. 무상감자는 돈 등을 받지 않고 감소되는 것으로 공시대상에서 제외

* 즉, 소속회사가 유상감자를 당할 때 공시대상, 소속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할 때는 공시대상 아님

○ A사가 금융회사를 통해 B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

① 금융회사가 단순중개하고, A사와 B사가 계열 관계인 경우	A사가 B사에게 매도한 내역을 공시
② 금융회사가 A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A사와 금융회사가 계열관계인 경우	A사는 금융회사에게 매도한 내역을 공시
③ 금융회사가 A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B사가 매입한 경우로서, 금융회사와 매입자 B사가 계열관계인 경우	금융회사가 B사에게 매도한 내역을 공시

※ 금융회사는 계열관계인 A, B사와의 유가증권거래로 인해 벌어들인 중개수수료를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공시양식 15, 16번)에 기재

○ (기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7일 이내 기업어음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12>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 (소속회사)		계열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매도금액)
		A	B	· ·	소계	C	·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④
	· ·								
	소계	⑤							
금융회사	C								
	D								
	· ·								
	소계	⑥							
합계		⑦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도회사가 공시

1. ①에는 B사(유가증권을 매도한 소속회사, 공시주체)가 A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을 기재
2. ②와 ③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와 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
3. ④에는 B사가 국내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②+③)를 기재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⑥⑦에 모든 계열회사가 A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공시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 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의 매도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금액) 및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입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입금액)

□ 작성방법

- 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
 - * 수익증권의 환매, 채권이나 CP 매입 후 상환 등은 공시대상이 아님
 - *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가증권 거래에 해당
- 친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 다만, 당해 양식에서는 친족에 속하는 배우자, 혈족1촌은 동일인과 같은 칸에 기재하므로 주의
 -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3>

가. 유가증권 매도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도회사 (소속회사)		관계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 회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융 회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나. 유가증권 매입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 (소속회사)		관계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 회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융 회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③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④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⑤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매입)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①+②+③+④)를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 ~ ⑧에 모든 계열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에게 매도하거나 이들로 부터 매입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4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예시] 결산일이 12월인 법인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3월인 법인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동안 계열회사에게 판매한 상품·용역 거래금액

□ 작성방법

☞ [주의사항]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없더라도 공시양식 중 「매출액 총계」 권의 「국내 매출액, 해외매출액, 계」는 작성해야 함

- 상품·용역거래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금융사의 경우는 영업수익)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을 의미

[예외] 공시하는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법 평가 손익 및 배당금 수익은 계열회사 매출액에서 제외

- 해외수출을 위해 국내상사에게 판매되는 상품(일명 로컬수출)의 경우 당해 매출액이 소속회사의 국내매출로 계상되면 국내매출로, 해외수출로 계상되면 해외수출로 기재

※ 대표회사가 취합하여 기재할 시 해외계열회사가 많은 경우 양식에서 해외계열회사별로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속회사별 해외계열회사 업체수 합계와 매출액 합계를 기재해도 무방
(해외계열회사의 A, B,..부분을 거래업체수로 명기)

- 다만 표 하단에 “소속회사의 해외계열회사별 거래금액은 소속회사의 공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석을 달 것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4>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자 매출회사 (소속회사)	국내계열회사							해외계열회사				매출액 총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국내계열사 계 (매출액)	A	B	· · ·	해외계열사 계 (매출액)	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A	B	· · ·	소계	C	· · ·	소계								
비 금 용 회 사	A														
	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소계	⑨													
금 용 회 사	C														
	D														
	· · ·														
	소계	⑩													
합계	⑪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발생 회사가 공시

※ 공시하는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 손익 및 자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익은 계열회사 매출액에서 제외

-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대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금융사의 경우 영업수익, 이하 동일)을 기재
- ②와 ③에는 B사가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와 국내 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를 각각 기재
- ④에는 B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②+③)를 기재
- ⑤에는 B사의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를 기재
- ⑥에는 B사의 전체 매출액(계열사, 비계열사 매출액 포함)을 기재. ⑦과 ⑧은 B사의 국내매출액 계 및 해외매출액 계를 각각 기재 < ⑥ = ⑦ + ⑧ >

* 매출액총계의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주의사항]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없더라도 「매출액 총계」 칸의 「국내매출액, 해외매출액, 계」는 작성해야 함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⑪에 모든 소속회사가 A사에게 매출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5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 소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분기공시, 소속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연1회 공시

구 분	소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소속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공시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공시기한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2월·5월·8월·11월 말일) 이내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내용	직전 <u>사업분기</u> 동안 국내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 분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직전 <u>사업연도</u> 동안 국내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 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주의사항] 사업분기(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거래 내역을 모두 기재하는 것임(주요 내역만 기재하고 일부를 생략하면 안됨)

□ 작성방법

- 상품·용역 거래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금융사의 경우는 영업수익)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을 의미
- 매출이 발생된 거래건(계약건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거래건으로 인식 가능)별로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등을 기재
- 거래건별로 작성이 원칙이나 거래건별 금액이 그 사업분기(혹은 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1% 미만이고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공시 가능
 - 합산하여 기재할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거래건을 기준으로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등을 기재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5>

가.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분기)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소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당해 양식 사용		업종	품목	대금지급 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비금융회사	A	②	③	④	⑤	⑥	
		소 계					⑦
		A사 소계					⑧
	B	비금융회사 소계					⑨
	비금융회사 소계						⑨
금융회사	C	금융회사 소계					⑩
	D	금융회사 소계					⑩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⑪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①에는 당해 회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한 국내계열회사(매입회사)를 기재
- ②에는 ⑥과 관련된 A사의 거래업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알파벳1자리와 4자리 숫자)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 [예시] “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 ③에는 ⑥과 관련된 A사의 거래품목을 기재. [예시] 조립식 주거용 주택 건설, 아파트 건설 등
- ④에는 현금, 어음, 현금·어음 혼용, 어음대체수단 등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을 기재
- ⑤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 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한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⑦에는 거래상대방 ①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기재
- ⑧에는 ⑦를 합산하여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⑩,⑪에 계열회사별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합계, 금융회사 소계, 전체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나.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연1회)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소속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당해 양식 사용	업종	품목	대금지급 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②	③	④	⑤	⑥	
비 금 용 회 사	A	①						
			소 계					⑦
			A사 소계					⑧
			비금융회사 소계					⑨
	B							
금 용 회 사	C							
	D							
	금융회사 소계					⑩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⑪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①에는 당해 회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한 국내계열회사(매입회사)를 기재
- ②에는 ⑥과 관련된 A사의 거래업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알파벳1자리와 4자리 숫자)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 [예시] “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 ③에는 ⑥과 관련된 A사의 거래품목을 기재. [예시] 조립식 주거용 주택 건설, 아파트 건설 등
- ④에는 현금, 어음, 현금·어음 혼용, 어음대체수단 등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을 기재
- ⑤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 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한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⑦에는 거래상대방 ①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기재
- ⑧에는 ⑦를 합산하여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⑩,⑪에 계열회사별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합계, 금융회사 소계, 전체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6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 (공시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직전 분기동안 국내계열회사에게 매도한 기타자산 매도금액(장부에 기재된 기타자산 매도금액)

□ 작성방법

- 기타자산이란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 중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이해돕기' 참조)
- 거래에서 발생한 매도 대가(처분가액, 임대료, 리스료 등)를 기재. 자산의 장부상 처분가액을 기재하므로 각종 평가손익·처분손익·환산손익 등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음

[예시] 장부가액 50억원인 건물을 80억원에 매도(부가세 제외)하여 처분이익 30억원, 기말에 미수금의 환산이익 5억원이 발생한 경우 매도가액인 80억원만을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해돕기

- ☞ 유동자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현금으로의 교환이 빠른 자산을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 ①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 법인세자산,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등
 - ②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 ☞ 비유동자산 : 보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①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 ⇒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등
 - ②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료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 산업재산권, 영업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임차권리금, 토지사용권리, 지상권 혹은 임차권, 지역권 등
 - ③ 투자자산 : 기업이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의 자산
 - ⇒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대여금, 장기성 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 ※ 임대 건물의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 건물, 기계장치, 무형자산(상표권 등) 등의 자산이 재무상태표 상에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관련 임대료, 사용료 등을 손익계산서 상 매출로 계상할 경우 본 양식에 기재하지 않고 15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양식에 기재하고 상표권 사용거래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양식(17)에도 별도로 기재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6>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도회사 (소속회사)		극내 계열회사							합계 (거래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 회사	A								
	B	①			②			③	④
	..								
	소계	⑤							
금융 회사	C								
	D								
	..								
	소계	⑥							
합계		⑦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도회사가 공시

-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임대, 리스 등을 포함. 이하 동일)한 거래 금액(처분가액)을 기재
- ②와 ③에는 B사가 기타자산을 비금융 계열회사와 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금액(처분가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
- ④에는 B사가 계열회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②+③)를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 ~ ⑦에 모든 소속회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비 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7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직전 사업연도 동안 **국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실적이 있는 회사(사용료 지급회사, 수취회사)가 거래상대방,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을 작성

□ 작성방법

○ 특정 기업집단임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권을 의미하며, 기업집단 식별과 관계없는 개별회사의 상표권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작성·공시

○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수취하지 않은 회사라도 상표권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기재

- 지급/수취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사유 기재

예)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료가 0임, 무상사용 계약체결, 사용료 관련 별도 계약체결 없음 등

○ 연간 사용료는 **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익 계산서상 상표권 사용료 **지급/수취액**을 기재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7>

(직전 사업년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소속회사명		거래상대방	지급/수취 여부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지급/수취액	사용료 산정방식
지급 회사	A	A	①	②	③	④	⑤
		B					
		...					
		합계					
	B	...					
지급회사 합계							
수취 회사	C	...					
	D	...					
	수취회사 합계						

<기재요령>

※ 특정 기업집단임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권 사용에 대한 거래내용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회사와 수취한 회사 모두 작성·공시

- ①에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수취 여부를 기재 (사용료를 지급한 회사는 “지급”, 수취한 회사는 “수취” 로 기재. 대표회사는 연간 사용료 지급/수취액 합계를 기재)
- ②에는 상표권 사용계약의 대상이 된 상표권의 특허청 등록번호를 기재(복수일 경우 대표 상표권 ○○외 몇 개로 기재)
- ③에는 상표권 사용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기재
- ④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익계산서상 상표권 사용료를 기재
- ⑤에는 상표권 사용계약으로 정한 사용료 산정방식을 기재

[예시] (매출액-광고선전비) × 0.**%)

1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 (공시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 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기타자산 매도장부가액 및 매입*한 기타자산 매입장부가액

* 매도 및 매입에는 임대, 리스 등 포함

□ 작성방법

- 기타자산이란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중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
- 거래에서 발생한 매도(매입) 대가(처분가액, 임대료, 리스료 등)를 기재. 자산의 장부상 처분가액을 기재하므로 각종 평가손익·처분손익·환산손익 등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8>

가. 기타자산 매도 등 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매도회사명 (소속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 회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융 회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나. 기타자산 매입 등 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매입회사명 (소속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 회사	A		①	②	③	④	⑤
	B						
	소계		⑥				
금융 회사	C						
	D						
	소계		⑦				
합계			⑧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과 기타자산(이하 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기재
-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③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④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⑤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매도(매입)한 기타자산 금액의 합계(①+②+③+④)를 기재
- 대표회사는 ⑥~⑧에 모든 계열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에게 매도하거나 이들로부터 매입한 기타자산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9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 (공시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

□ 작성방법

- 거래상대방별 채권 잔액을 기재하되, 실물채권과 금융채권의 장부상 잔액(회사의 재무상태표상 분류 기준을 준용)
 - 실물 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보증금 잔액
 - 금융 채권 : 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
 - 금융사의 경우 실물채권에는 미수금·선급금·보증금을, 금융채권에는 대출채권을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9>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자 채권회사 (소속회사)		국내 계열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채권금액)							
		A			· ·			소계			C			· ·			소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비 금 회 사	A																										
	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소계																										
금 회 사	C																										
	D																										
	· ·																										
	소계																										
합계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채권회사가 공시

- ①에는 B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실물채권(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보증금)잔액을, ②에는 B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금융채권(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을, ③에는 ①과 ②의 합계 금액을 기재
- ④와 ⑤에는 B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와 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을 각각 기재
- ⑥에는 B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실물채권 합계액을, ⑦에는 비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채권 합계액을, ⑧에는 ⑥과 ⑦의 합계액을 기재
- 기업집단대표회사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합계란을 기재

20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 (공시기준) 직전 분기말 기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채무보증 건별로 채무보증 받은 회사, 금융기관, 여신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채무보증 건별로 채무보증 받은 회사,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
- (이행보증·납세보증 등)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납세보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등의 건수와 보증금액

□ 작성방법

- 「여신금액」은 여신 잔액을 기재하되, 당좌차월·어음할인과 같이 한도약정을 맺은 경우는 당해 한도를 여신으로 기재
 -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재하고, 채무보증약정 후 여신의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보증금액 칸에는 보증약정금액을 기재
 - 외화표시 채무보증일 경우 분기말의 금융결제원 고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다만, 회사 내에 별도로 적용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사용 후 주석 기재)
-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은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에만 기재

- 「이행보증·납세보증 등」 칸에는 타인을 위한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을 기재하므로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위해 보증한 이행보증 등은 제외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및 제10조의2」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사 제외)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라 함

* 「여신」이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의미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모든 채무보증을 의미하며, 크게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¹⁾」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²⁾」으로 구분

1.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말함
2.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 : 금융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채무보증 * 등을 들 수 있음

*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회사간 직접 차입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이므로 조합, 개인, 해외 계열사 등에 대한 채무보증도 포함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0>

가.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소속회사)	채무보증 받은 국내계열회사	금융기관	여신금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A		①	②	③	④
	소 계				
B					
C					
합계			⑤	⑥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채무보증한 회사(소속회사)에 금융보험사는 제외

- ①에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명을 기재
- ②에는 채무보증을 받은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여신금액 잔액을 기재
- ③에는 채무보증금액을, ④에는 채무보증기간을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⑥에 여신금액, 채무보증금액 잔액을 합산하여 기재

나.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소속회사)	채무보증 받은 자		채권자	채무금액 잔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비 금 용 회 사	국내 계열회사		①	②	③
기타						
소 계						
B		..				
비금융회사 합계				⑤	⑥	
금 용 회 사	국내 계열회사	기타				
	기타					
	소 계					
	D	..				
금융회사 합계				⑦	⑧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⑨	⑩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채무보증한 회사(소속회사)에 금융보험사 포함, 채무보증을 받은 자에 해외계열사, 조합, 개인 등 포함

1. ①에는 채권자명을, ②에는 채무금액잔액을, ③에는 채무보증금액을, ④에는 채무보증기간을 기재
2.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⑩에 모든 계열회사의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잔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다. 이행보증·납세보증 등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한 회사 (소속회사)	건 수	금액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①	②	③
	계		
		④	⑤
납세보증			
	계		
		⑥	⑦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계		
	합 계	⑧	⑨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타인을 위한 보증을 기재하며, 자신을 위해 보증한 이행보증 등은 제외

1. ①에는 공시 대상 회사(공시 주체)의 사명을 기재
2.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보증 금액을 ②와 ③에 각각 기재
3.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납세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금액을 ④와 ⑤에 각각 기재
4.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채무보증 금액을 ⑥과 ⑦에 각각 기재
5. 대표회사는 ⑧과 ⑨에 계열회사 전체의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의 건수와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

21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공시기준) 직전 분기말 기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분기말 현재 국내계열회사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한 물적담보 잔액, 내용, 제공사유 등
- 작성방법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는 별도 칸에만 기재
 - <계열회사 간 담보제공 내역> 양식 중 「② 금액」 칸은 담보금액을 기재

<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의 차이점 >

채무보증은 ‘인적담보’를 의미하며, 담보제공은 물권담보, 예금담보 등 ‘물적담보’를 의미함. 다만, 백지어음 제공 등 사실상 인적담보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보증에 해당됨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1>

가. 계열회사 간 담보제공 내역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제공회사 (소속회사)		제공받은 회사	내용	금액	제공 사유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소 계			④	
	B	..			
비금융회사 합계				⑤	
금 용 회 사	C				
	D	..			
	금융회사 합계			⑥	
전체 계열회사 합계				⑦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공시

- ①에는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예, 부동산, 국채, OO사 발행 사채 등]을 기재
- ②에는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담보제공 잔액을 기재
- ③에는 담보제공 이유[예, B사의 금융기관 대출 등]를 기재
- ④에는 A사의 모든 계열회사에게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 제공 잔액을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 ~ ⑦에 모든 계열회사의 담보제공 잔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내역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담보제공 내역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공회사 (소속회사)	건 수	담보 금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	①	②	③
	합 계	④	⑤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①에는 공시 대상 회사(공시 주체)의 사명을 기재
- 타인을 위하여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내역 중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의 현재 존재하는 건 수와 담보 금액을 ②와 ③에 각각 기재
- 대표회사는 ④와 ⑤에 계열회사 전체의 담보제공 건 수와 금액을 기재

22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 (대상회사)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발행주식의 30%(비상장은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

* 대상 해당여부는 금년도 지정일 기준. 금년도 지정일에 기준에 해당(30%, 20% 이상) 되면, 비율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공시

□ (공시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공시대상 회사별로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총수일가)과의 상품·용역, 자금 및 자산(유가증권, 기타자산) 거래 현황 등을 공시 (최근 3개 연도를 공시)

※ 최근 3개 연도 분을 누적하여 공시하되 2019년 5월에 공시하는 경우 2019년 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개 연도 분을, 2018년 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개 연도 분을 누적해서 작성

○ 공시대상 회사의 계열사·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대여·매도 뿐 아니라 매입·차입 등도 구분하여 기재

□ 작성방법

- 상품·용역거래는 손익계산서 상 매출(금융사의 경우는 영업수익)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을 의미
- 해당 기간 동안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발생금액 기준으로 작성
 - 해당 기간 동안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어도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 차입(또는 대여)금액을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
- 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
 - * 수익증권의 환매, 채권이나 CP 매입 후 상환 등은 공시대상이 아님
- 소속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국내계열회사에게 양도하고 현금(또는 현물 등)을 받은 경우 공시대상
 - 즉, 매도에는 매각 뿐 아니라 제공, 발행 등도 포함된 개념으로 유상증자, 교환 등을 통해 유가증권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무상증자는 돈 등을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공시대상 아님)
- 기타자산이란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
 - 거래에서 발생한 매도 대가(처분가액, 임대료, 리스료 등)를 기재. 자산의 장부상 처분가액을 기재하므로 각종 평가손익·처분손익·환산손익 등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음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2>

가. 최근 3개년도 계열회사간 매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매출회사 (소속회사)	구분	업종	대표 품목	당기			전기			전전기		
				국내계열사 매출액	매출액	비중 (%)	국내계열사 매출액	매출액	비중 (%)	국내계열사 매출액	매출액	비중 (%)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⑥					
	B											
	..											
	소계	⑦										
금 용 회 사	C											
	..											
	소계	⑧										
합계		⑨										

나. 최근 3개년도 계열회사간 매입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매입회사 (소속회사)	구분	업종	대표 품목	당기			전기			전전기		
				국내계열사 매입액	매입액	비중 (%)	국내계열사 매입액	매입액	비중 (%)	국내계열사 매입액	매입액	비중 (%)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⑥					
	B											
	..											
	소계	⑦										
금 용 회 사	C											
	..											
	소계	⑧										
합계		⑨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최근 3개년도분을 당기, 전기, 전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19.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18.1월~2018.12월 말 기준, 전기는 2017.1월~2017.12월 말 기준, 전전기는 2016.1월~2016.12월 말 기준

1. ①에는 ④과 관련된 A사의 거래업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알파벳1자리와 4자리 숫자)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 [예시] “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2. ②에는 A사의 거래품목을 기재. [예시] 조립식 주거용 주택 건설, 아파트 건설 등
3. ③에는 A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또는 매입) 합계를 기재
*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기재
4. ④에는 A사의 해당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또는 매입) 합계를 기재
5. ⑤에는 A사의 국내계열회사 매출액(또는 국내계열회사 매입액)을 전체 매출(매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6. ⑥에는 해당 기간(전기) 동안 A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또는 매입) 합계를 기재(이하 같음)
7.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⑦~⑨에 해당 소속회사의 국내계열사 매출(매입)액, 전체 매출(매입)액, 국내계열사 매출(매입) 비중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다. 최근 3개년도 차입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관계 차입회사 (소속회사)		당기				전기				전전기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B												
	..												
	소계	⑥											
금 용 회 사	C												
	..												
	소계	⑦											
합계		⑧											

라. 최근 3개년도 대여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관계 대여회사 (소속회사)		당기				전기				전전기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B												
	..												
	소계	⑥											
금 용 회 사	C												
	..												
	소계	⑦											
합계		⑧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최근 3개년도분을 당기, 전기, 전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18.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17.1월~2017.12월 말 기준, 전기는 2016.1월~2016.12월 말 기준, 전전기는 2015.1월~2015.12월 말 기준

1. ①에는 A사가 계열회사에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2. ②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3. ③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에게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4. ④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포함)에게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의 합계(①+②+③)를 기재
5. ⑤에는 해당기간(전기) 동안 A사가 계열회사에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이하 같음)
6.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⑧에 해당 소속회사가 자금을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마. 최근 3개년도 자산(유가증권, 기타자산) 매도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관계 매도회사 (소속회사)		유형	당기				전기				전전기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비 금 용 회 사	A	유가증권	①	②	③	④	⑤							
		유형자산	⑥											
		무형자산	⑦											
	B	유가증권												
		무형자산												
소계			⑧											
금 용 회 사	C	유가증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⑨										
합계			⑩											

바. 최근 3개년도 자산(유가증권, 기타자산) 매입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매입회사 (소속회사)		유형	당기				전기				전전기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비 금 용 회 사	A	유가증권	①	②	③	④	⑤							
		유형자산	⑥											
		무형자산	⑦											
	B	유가증권												
		무형자산												
소계			⑧											
금 용 회 사	C	유가증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⑨										
합계			⑩											

< 기재요령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최근 3개년도분을 당기, 전기, 전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18.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17.1월~2017.12월 말 기준, 전기는 2016.1월~2016.12월 말 기준, 전전기는 2015.1월~2015.12월 말 기준

1. ①에는 A사가 계열회사에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2. ②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3. ③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에게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4. ④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포함)에게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의 합계(①+②+③)를 기재
5. ⑤에는 해당기간(전기) 동안 A사가 계열회사에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
6. ⑥에는 A사가 계열회사에 유형자산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이하 같음)
7. ⑦에는 A사가 계열회사에 무형자산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이하 같음)
8.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⑧~⑩에 해당 소속회사가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23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계열회사 간 1주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순환출자 현황

<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제도 >

□ 순환출자의 개념 : 3개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가 고리와 같이 상호 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공정거래법 제2조 3의5)

□ 주요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순환출자 형성 및 기존의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출자)를 금지(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2항)

○ 다만 아래의 사유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 3년의 해소유예기간을 부여(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2항 각호 및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3항)

- 기업의 사업구조개편(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등)
- 정당한 권리행사(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개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의결 및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 작성방법

(1) 소속회사

○ 소속회사는 순환출자고리에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

- 자신이 속해 있는 순환출자 고리의 시작과 끝을 공시 주체인 당해 소속회사로 작성

- 순환출자고리 내에서 자신이 출자한 현황은 지분율, 주식수, 장부가액을 모두 표시하고, 순환출자고리 내 다른 회사간의 출자현황에 대해서는 화살표로만 표시
 - 「지분율」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
 - 「주식수」에는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
 - 「장부가액」에는 당해연도 지정일 기준 출자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재

(2) 대표회사

- 대표회사는 소속회사용 순환출자현황양식과 대표회사용 순환출자현황 취합양식 2가지를 공시해야 함
- 대표회사는 기업집단내 존재하는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고, 소속회사별로 중복되는 순환출자는 통합하여 공시
 - 순환출자 고리의 시작과 끝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순환출자 고리내 총수일가 지분 보유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로 하여 작성
- 각 회사별 출자현황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3>

가.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현황 (소속회사용)

(금년도 지정일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사5	...	
1	①★ A	→ ②지분율		B	→ ★●C	→ ★A		
		③ 주식수	보통주					
			우선주					
			합계					
	④장부가액							
⑤. 출자시점 및 유형:								
2	★A	→ 지분율		B	→ ★●C	→ ●D	→ ★A	
		주식수	보통주					
			우선주					
			합계					
	장부가액							
. 출자시점 및 유형:								
:								

< 기재요령 >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 소속회사 A는 기업집단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와 협조하여 자신이 포함된 순환출자고리를 확인하여 모두 공시하고, 순환출자고리 내 자신의 출자현황은 지분율, 주식수, 장부가액을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 내 다른 회사의 출자현황은 화살표로만 표시

1. ①의 회사명에는 공시주체인 당해회사를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2.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2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2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3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4. ③에는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
5. ④에는 당해연도 지정일 기준 출자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재
6. ⑤에는 가장 최근 출자한 시점(또는 변동된 시점) 및 순환출자 형성 유형(유상증자/합병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0000.00.00 A사가 ~ 사유로 B사 유상증자 참여(신주취득)

나.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현황 (대표회사용)

(금년도 지정일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사5	...
1	① ★A	→		→		→								
		②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주식수	보통주	③	B	주식수	보통주	★ ●C	주식수	보통주	★A			
			우선주	④			우선주							
합계	⑤	합계	합계	합계										
2	★A	→		→		→				→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주식수	보통주		B	주식수	보통주	★ ●C	주식수	보통주	●D	주식수	보통주	★A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합계		합계	합계	합계										
⋮														

< 기재요령 >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 대표회사는 기업집단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순환출자고리를 공시하고, 소속회사별로 중복되는 순환출자고리는 통합하여 공시
1. ①의 회사명에는 순환출자고리 내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총수일가 지분 보유 회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2. 전체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2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피출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4. ③, ④, ⑤에는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를 기재

24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 내역

- (작성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작성기준일 순환출자현황 및 변동내역
- 작성방법

(1) 소속회사

- 소속회사의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지분을 및 보유주식 수를 작성하여 당기 및 전기로 구분하여 공시
-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세부 사항은 “세부 변동내역”에 별도로 작성
 - 순환출자 형성(소멸), 순환출자 고리 내 지분을 증가(감소) 등의 변동 발생 사유, 취득(처분)가액, 변동시점 등을 기재

(2) 대표회사

- 대표회사는 소속회사용 순환출자현황 양식(당기, 전기)과 대표회사용 전체 순환출자현황 양식(당기, 전기) 2가지를 공시해야 하고, 대표회사용 작성 시에는 소속회사 별로 중복되는 순환출자 고리는 통합하여 공시
 - 순환출자 고리의 시작과 끝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순환출자 고리 내 총수일가 지분 보유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로 하여 작성
- 회사간 출자현황에는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 및 주식수를 작성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4>

가.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소속회사용)

< 당기 순환출자 현황 >

(당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사5	...		
1	①★ A	→	B	→	★●C	→	★A		
		②지분율							
		보통주 ③							
		우선주 ④							
합계 ⑤									
⑥장부가액									
2	★A	→	B	→	★●C	→	●D	→	★A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합계									
장부가액									
기타									

< 전기 순환출자 현황 >

(전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사5	...		
1	①★ A	→	B	→	★●C	→	★A		
		②지분율							
		보통주 ③							
		우선주 ④							
합계 ⑤									
⑥장부가액									
2	★A	→	B	→	★●C	→	●D	→	★A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합계									
장부가액									
기타									

< 기재요령 >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 소속회사 A는 기업집단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와 협조하여 자신이 포함된 순환출자고리를 확인하여 모두 공시하고, 순환출자고리 내 자신의 출자현황은 지분율, 주식수, 장부가액을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 내 다른 회사의 출자현황은 화살표로만 표시
- ※ 최근 2개 분기분을 당기, 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16.11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16.7월~2016.9월 말 기준, 전기는 2016.4월~2016.6월 말 기준

- ※ ‘기타’는 해당분기동안 신규형성 또는 강화되었으나, 같은 분기내에 해소된 경우에 작성하고, 순번 제일 아래쪽에 기재

1. ①의 회사명에는 공시주체인 당해회사를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2.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2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2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3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4. ③~⑤에는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
5. ⑥에는 해당분기말 기준 출자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세부 변동내역(전기대비)>

(단위: 백만원)

순번	구분	변동사유	취득(처분) 가액	변동시점	유예기간
1	①	②	③	④	⑤
2					
3					
기타					

< 기재요령 >

※ 24번 양식의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세부 변동 내역을 작성(상기 순환출자 변동내역에 표시한 순환출자고리의 순번에 따라 기재)

※ ‘기타’ 는 해당분기동안 신규형성 또는 강화되었으나, 같은 분기내에 해소된 경우에 작성하고, 순번 제일 아래쪽에 기재

1. ①에는 순환출자 형성·소멸, 지분율 증가·감소, 보유주식 수 증가·감소(지분율 변동없이 보유주식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등을 기재
2. ②에는 순환출자 형성·소멸, 지분율 증감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순환출자 형성, 지분율 증가, 보유주식수 증가의 경우 공정거래법 §9의2 제2항 단서 각 호(1~5호) 해당여부를 괄호안에 기재
 [예시] B사를 흡수합병하여 신규순환출자고리 생성(0%→10%) (법 1호)
 C사 지분을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10%→5%)
3. ③에는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을, 처분시에는 처분가액을 기재
4. ④에는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한 시점을 기재
 [예시] 지분 취득·매각의 경우 주권교부일 또는 주금납입일, 합병·분할 등의 경우 등기일 등
5. ⑤에는 순환출자 형성·지분율 증가가 공정거래법 §9의2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공정거래법 §9의2 제3항 각 호에 부여된 유예기간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각호를 괄호안에 기재
 [예시] 2014.8.20.~2015.2.19.(법 1호)

나.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대표회사용)

< 당기 순환출자 현황 >

(당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사5	...			
1	① ★A 주식수	→		→		→		★A	●C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A				
		②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보통주	③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④	우선주		우선주											
		합계	⑤	합계		합계											
2	★A 주식수	→		→		→		★A	●C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D	주식수	★A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합계		합계		합계											
⋮																	

< 전기 순환출자 현황 >

(전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사5	...			
1	① ★A 주식수	→		→		→		★A	●C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A				
		②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보통주	③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④	우선주		우선주											
		합계	⑤	합계		합계											
2	★A 주식수	→		→		→		★A	●C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D	주식수	★A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합계		합계		합계											
⋮																	

< 기재요령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대표회사는 기업집단 내 모든 순환출자고리를 공시하고 소속회사별로 중복되는 순환출자고리는 통합하여 공시

※ 최근 2개 분기분을 당기, 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17.11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17.7월~2017.9월 말 기준, 전기는 2017.4월~2017.6월 말 기준

1. ①의 회사명에는 순환출자고리 내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총수일가 지분 보유 회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2. 전체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2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4. ③~⑤에는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25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고, 체제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시행령)이므로 국내계열회사를 의미. ** 단, <양식> 주주현황 中 계열회사는 국내+해외 계열사를 의미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

□ 지주회사 등의 개념(공정거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야 함)
- 손자회사 :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위 동일)

□ 주요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8조, 제8조의2)

- 지주회사 : 설립 및 전환 신고의무. 부채비율 자본총액의 200% 제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 40% 이상) 충족.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5% 이상 비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등
-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율요건(상장사 20%, 비상장 40% 이상) 충족.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
- 손자회사 : 증손회사(손자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

□ 작성방법

- 공시주체 :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이 해당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 소속회사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음)
- *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이라도 대표회사는 해당 공시양식 <표>안에(혹은 공시양식표를 삭제한 자리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할 것
- 「주식수」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및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합산한 총 주식수를 기재
 - 「지분율」에도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
- 주주현황 중 「계열회사」에는 국내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기재
- 「합계」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전체 국내계열회사 수 및 지주회사 체제 내 국내계열회사의 수,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의 수를 기재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5>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지주체제밖 계열회사		주주현황											
		동일인		친족		계열회사 (국내+해외)		기타 동일인관련자		자기주식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비 금 용 회 사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B												
	...												
금 용 회 사	C												
	D												
	...												
합 계	⑬	※ 국내 계열회사 수 : 개사 (지주회사 체제 내 국내계열회사 수 : 개사) ⑭											

< 기재요령 >

※ 주식수 및 지분율은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등 의결권 있는 주식 및 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산)를 의미. 대표회사가 공시.

- ①과②에는 국내계열회사 중 지주회사 체제밖 A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보통주, 우선주 합산) 중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지분율[동일인 보유 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 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③과④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⑤와⑥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해외계열사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기재
- ⑦과⑧에는 동일인 관련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 중 친족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 동일인관련자(등기임원, 비영리법인 등)의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기재
- ⑨와⑩에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기재
- ⑪은 ①,③,⑤,⑦,⑨ 주식수의 합계. ⑫는 A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⑪이 차지하는 비율
- ⑬에는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수를 기재
- ⑭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전체 국내계열회사 수 및 지주회사 체제 내 국내계열회사 수 기재

26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 (작성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공시내용)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및 의결권 행사 여부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

□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제11조)

- (기본원칙)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함

- (예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법 제11조 1호)

* 피출자회사도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를 말함

-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2호)

- 피출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3호)

이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이 행사 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 작성방법

- 공시주체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소속회사 및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 * 금융보험사를 보유하지 않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대표회사는 해당 공시양식 표안에(혹은 공시양식표를 삭제한 자리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할 것(소속회사는 제외)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시대상집단(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은 공정거래법 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의결권행사현황에 대하여 공시는 해야 함에 주의
- 피출자자에 해당하는 국내 계열회사가 금융·보험사에 해당하는 경우(출자회사 및 피출자회사가 모두 금융보험사인 경우)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
- 「주식수」 및 「지분율」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한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
- 피출자회사 주주총회 안건에는 대상기간 내 상정된 모든 안건을 기재하고, 금융보험사가 그중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괄호안에 함께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출자 계열회사 수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의 합계를 기재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6>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주, %)

소속 회사명	피출자회사 현황			출자현황			의결권행사 현황		
	회사명	상장 여부	전체 주식수	주식수	승인 주식수	지분율	주총일	안건	의결권 행사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계	⑪	-	-	-	-	-	-	-	⑫

< 기재요령 >

※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가 공시.

- ①에는 해당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회사명을 기재
- ②에는 금융·보험사(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금융·보험사는 제외한다) 회사명을 기재, ③에는 상장여부를 기재(상장회사의 경우 “상장”, 비상장회사의 경우 “-” 로 표시)
- ④에는 피출자회사(②)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를 기재
- ⑤에는 금융·보험사(①)가 소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②)의 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를 기재하고, ⑥에는 ⑤의 주식수 중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호)를 기재
- ⑦의 지분율에는 피출자회사의 전체 주식수 중 해당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⑤의 주식수를 ④의 전체 주식수로 나눈 비율] 을 기재(분기 종료일 기준).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⑧에는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재하고, ⑨에는 주주총회 안건을 모두 기재
* 해당 기간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 “개최실적 없음” 이라고 기재
- ⑩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 또는 ‘×’ 로 기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우측 괄호 안에 의결권행사의 공정거래법(제11조)상 근거를 기재
☞ 예시 : ○(11조 2호), ○(11조 3호 가), ○(11조 3호 나), ○(11조 3호 다)
공정거래법 외 ⇒ ○(*****법 00조 00항 00호)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⑪에는 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출자 계열회사 (②) 수의 합계를 기재하고, ⑫에는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의 합계를 기재

7 공시절차

☐ 공시대상회사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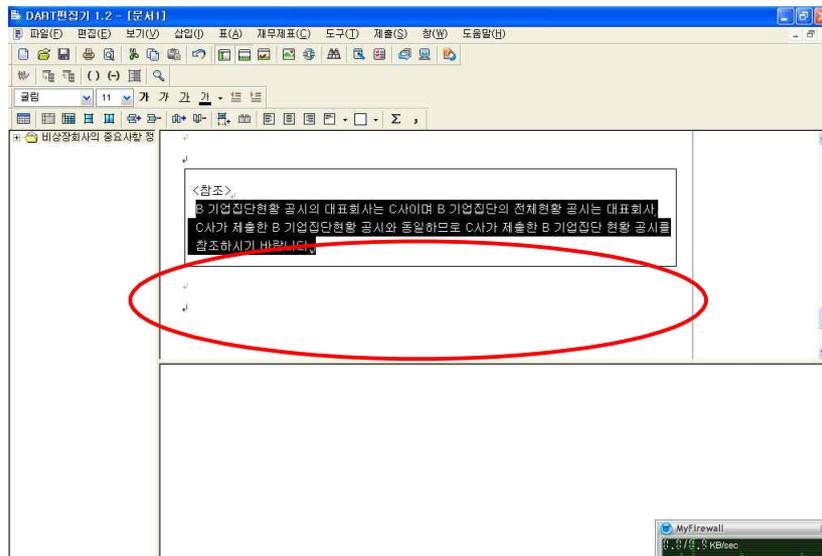
순서	방법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등록’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면제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팩스로 송부 ○ 3일 내에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결과 확인 ※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사설인증서를 발급/폐기하기 위해 ‘비밀번호변경 코드’가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 ※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등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
2. S/W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자료실’에서 ‘DART 제출소프트웨어 설치본’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프로그램 설치 후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업데이트 파일이 추가로 설치됨
3. 인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중 한 가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에서 공인하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에서 발급 ② 접수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단의 ‘등록/재등록’을 클릭하여 등록 신청 ③ 안내에 따라 나머지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 - 사설인증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② ‘인증서 관리-사설인증서 발급’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발급이 완료됨 ※ 사설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력하는 인증서 암호는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되므로 반드시 숙지

순서	방법
4. 문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윈도우 시작버튼 - 프로그램 - DART 제출소프트웨어 - DART편집기’ 클릭하여 DART편집기 실행 ① ‘파일-새 문서’메뉴를 클릭 후 서식을 열어 작성 ② 문서 작성이 끝나면 ‘도구-파일형식 검사’메뉴를 실행하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③ ‘파일-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메뉴를 실행하여 공시용 화면 점검 <p>※ 접수홈페이지 ‘기업공시안내자료’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지침서인 ‘전자문서제출요령’을 다운로드하여 참고</p>
5. 전송파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생성’메뉴 실행 ② 제출의무자 고유번호 입력하고 업무 및 보고서, 첨부파일 등을 선택 ③ 전송파일명 및 연락처 입력 ④ 전자서명 창이 뜨면 위의 순서 ‘[3] 인증서발급 및 등록’에 따라 발급 /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⑤ 전송파일(-.DRT)이 생성됨
6. 전송파일 제출 및 결과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순서 ‘[5] 전송파일 만들기’ 완료 후 바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거나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제출’메뉴를 실행하면 인터넷을 통해 즉시 제출 및 결과 확인이 가능 - 또는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문서제출-신규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전송파일(-.DRT)을 제출하고 ‘제출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p>※ 첨부서류만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첨부추가 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제출</p> <p>※ 접수시간 : 평일 07:00 ~ 19:00 - 당일접수 : 07:00 ~ 18:00 - 익일접수 : 18:00이후~19:00(★공시기한 마지막날 18시를 넘지말 것)</p>
7. 공시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서 조회
※ 문의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전화 ○ 공정위 소관 공시제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공정위 공시점검과 044-200-4868 - 기업집단 현황 공시 : 공정위 공시점검과 044-200-4874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공정위 공시점검과 044-200-4871 ○ 제출S/W 및 접수·공시홈페이지 사용법 안내(금감원 전자공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2번 → 3번) <p>※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 ‘기업공시안내자료’의 전자문서제출요령 참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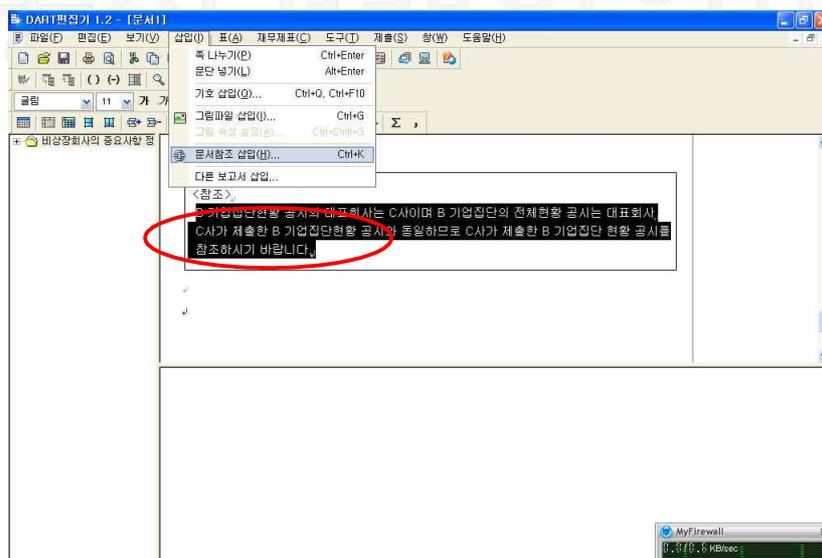
☞ 참조공시 연결 작업순서

※ DART편집기 상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양식 작성시 양식 첫 장의 참조박스 내용에 대표회사에서 작성한 공시(기업집단전체현황공시)를 문서참조 삽입 기능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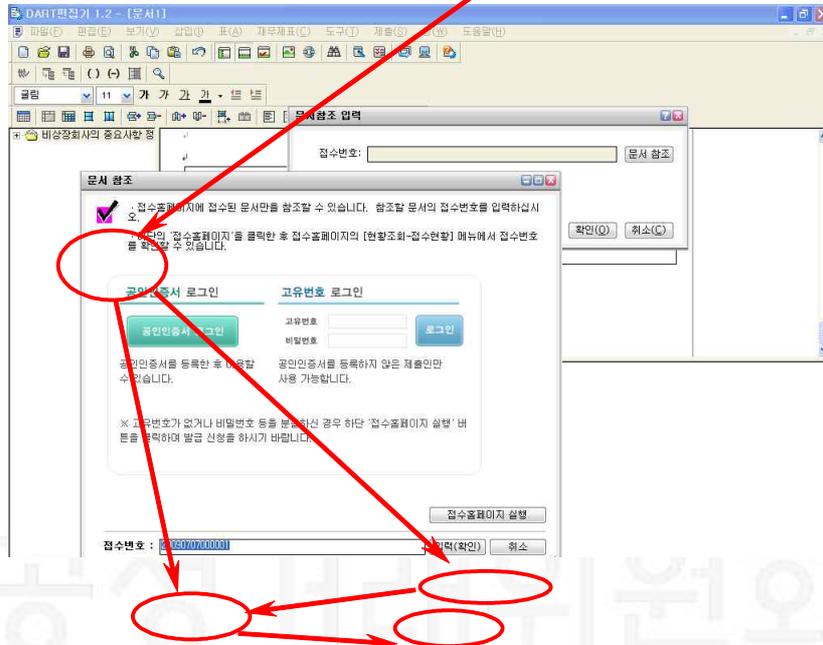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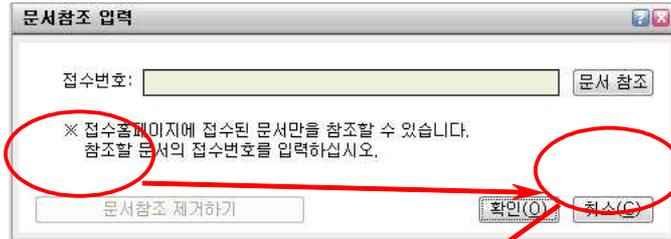
1. 참조 박스의 내용 전체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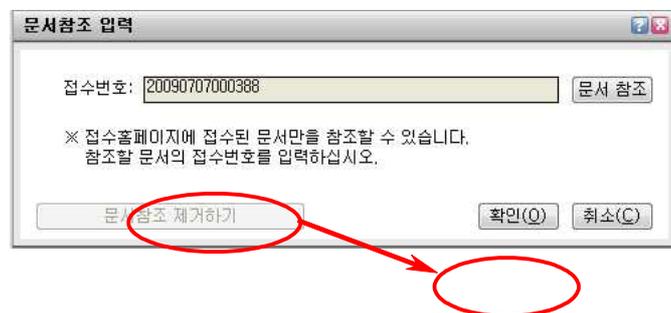
2. [삽입] / [문서참조 삽입] 메뉴를 클릭한다.



3. [문서참조 입력] 창에서 문서참조버튼을 눌러 [문서참조] 창을 띄운 후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를 실행하여 접수번호를 검색하여 입력하거나 직접 접수번호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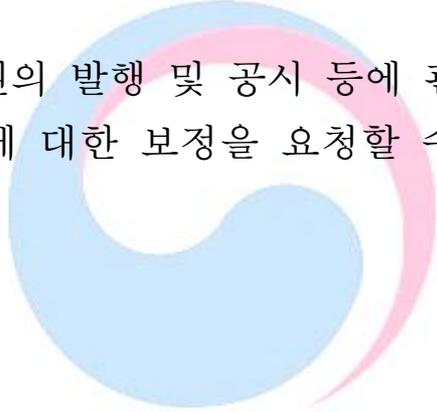
4. 접수번호가 입력되면 확인버튼을 눌러 연결을 완료한다.



8 수탁기관의 업무

◆ 수탁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서의 수신 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공시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시사항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9 위반시 제재

◆ 공시대상회사가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시정명령 부과
- 법 제69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 별표3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 2017년 5월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 개정되어, 경미한 공시위반 행위(지연일수 3일 이하, 공시 집단에 신규 지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등)에 대한 ‘경고’ 규정이 삭제되고,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50% 감경 사유)이 됨에 따라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참고> 시행령 별표 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1,000
	기한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

◇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별 최종 체크리스트 ◇

공시항목	공시내용	확인
일반현황 (연1회)	① 회사의 개요	
	④ 영위업종 현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② 회사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동자산·비유동자산 등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 수치와 일치하는지 여부	
	③ 회사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이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수치와 일치하는지 여부	
	④ 해외 계열회사 현황	
	- 누락된 해외계열사가 있는지 여부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 국내계열회사 및 해외계열회사의 편입, 제외 확인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연1회)	⑥ 임원현황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임원현황이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	
	⑦ 이사회, 위원회,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운영현황	
	- 이사회 안건 및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 누락 여부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이 정관에 따라 제대로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소유 현황 (연1회) (분기)	⑧ 소유지분현황(연1회)	
	- 주주현황의 동일인관련자 구분이 적절히 되어있는지 여부	
	⑨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분기)	
	- 자기주식의 주식수, 지분율, 장부금액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거래현황 (연1회) (분기)	⑩⑪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현황(분기)	
	- 직전분기동안의 자금차입(계열회사) 및 자금대여(계열회사, 특수관계인)가 있었는지 여부	
	⑫⑬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간 유가증권거래 현황(분기)	
	- 직전분기동안 유가증권을 매도(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매입(계열회사, 특수관계인)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취득 여부	
	⑭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연1회)	
	-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을 공시	

공시항목	공시내용	확인
	- 국내계열사 매출액, 해외계열사 매출액, 매출액총계(계, 국내 매출액, 해외매출액)의 합계가 맞는지 여부	
	⑮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분기/연1회) - 직전분기(상장사) 및 직전연도(비상장사)동안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분기(상장사)·연(비상장사)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⑯⑱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간 기타자산거래 현황(분기) - 직전분기동안 기타자산을 매도(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및 매수(특수관계인)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⑰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연1회) - 직전 사업연도동안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	
	⑲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연1회) - 직전연도 말 기준 존재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지 여부	
	⑳㉑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담보제공 현황(분기) - 직전연도 말 기준 존재하는 채무보증(제한대상, 제한 제외대상 등) 및 담보제공내역이 있는지 여부	
	㉒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연1회) - 공시 대상 여부 및 공시 기준일 동안 상품·용역, 자금, 자산거래 등이 있는지 여부	
순환출자 현황 (연1회) (분기)	㉓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연1회) - 누락된 순환출자고리가 있는지 여부	
	㉔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분기) - 직전분기동안 순환출자에 포함된 자기회사의 출자내역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지주회사 현황 (연1회)	㉕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 및 변동여부	
금융보험사 의결권현황 (분기)	㉖ 금융·보험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현황 -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및 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